

영화 <재심>을 통해서 알아보는 재심제도

영화 <재심>에서는 억울한 피해자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재심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재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영화 <재심>을 보신 적 있나요?
<재심>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심제도를 다루며 억울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

영화 <재심>에서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10대 소년 현우가 등장했습니다.

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봉사 중 이를 알게 된 변호사 준영은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현우를 덜컥 돕기로 결정했습니다.



그러나 현우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정의해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준영은 진심으로 현우를 돕기 시작합니다.

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재심제도는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.



이 영화를 통해 재심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, 이번 ‘있을 법한 이야기’에서는 재심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.

이는 가장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기 때문에, 법률에서는 재심사유를 따로 규정해 두어 이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

재심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형사소송법 제420조(재심사유)

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1.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
2.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, 감정,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
3.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
4.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

5.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,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
6. 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
7. 원판결,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,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,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.

특히 제5호의 경우 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이 필요합니다.

새로운 증거이어야 하며, 그 증거는 확정판결 이전에 제시된 증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명백하여야 합니다.

그렇다면 관례에서는 재심의 사유가 되는 증거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?

대법원 2009. 7. 16.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

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‘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’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(적극)에 관하여 관례는

『[다수의견]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‘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’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.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.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,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,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,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‘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’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』라고 판시하였다.

재심제도는 예외적인 구제절차이고,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)